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고령군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5. 7.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및 ☆☆☆ △△△△△△△ 조성공사 추진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고령군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1%)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군 ▽▽▽▽과에서는 **○○○○○○○ 및 ☆☆☆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2012.05.02. ◇◇◇◇◇◇(주) 외 ○개사와 공사를 계약하고 2012.05.07. 착공하여 ‘15.6.8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야 준공만료일 3일전인 ‘15.6.5 ◁◁◁◁◁◁◁◁◁◁ 및 △△△ △△조성 지연을 사유로 2015.06.09.부터 2015.07.20.까지 42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연장사유인 ◁◁◁◁ ◁◁◁◁◁ 설치의 경우 ▽▽▽▽과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이고 부지내 마당에 위치하고 있으나 5.25㎡(3.5×1.5)의 소규모이며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도 기존에 엘피지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준공이나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 △△ 조성은 본 사업부지 바깥에서 시행되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공사를 연장하여야 할 사유는 되지 못하며, 더욱이 당초 공사기간 종료일을 3일 앞두고 공사기간 연장한 2015.06.05.의 경우 마당의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공연장 등

건축물 바닥 및 천장의 마감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으며 공정율은 91.14%였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이 종료됨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공사의 준공과는 무관한 부당한 사유를 들어 42일간의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주) 외 ○개사에 관계규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000,000천원(3차분공사비 0,000,000천원 × 42일× 0.1%)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이 고령군 ▽▽▽▽과에서는 ○○○○○○○ 및 ☆☆☆ △△△△△△ 조성공사 업무를 소홀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확장공사 추진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고령군 ㉦㉦㉦㉦과
내 용	

1. 책임감리원 지도감독 부실

고령군(㉦㉦㉦㉦과)에서는 ▽▽·△△ ○○○○ 확장공사를 ☆☆건설(주) 대표 ∫∫∫과 도급액 0,000,000천원에 2012.12.24. 계약 체결하여 2012.12.28. 착수하여 2017.04.20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고,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 대표 ℃℃℃과 도급액 000,000천원에 2013.01.31. 계약 체결하고 2013. 02.04. 착수하여 2015.12.20.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구)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에 따라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59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와 시공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서 제44조에는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서 제6조에 따라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령군(㈜㈜㈜㈜과)에서는 위 공사의 NO.0+000지점에 보강토옹벽 L=2m, 블록 9개, 공사비 0,000천원 상당이 부실 시공되어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수립·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일 실시하여야 할 자체안전점검을 2015.04.01.부터 2015.06.12. 감사일 현재까지 72일간 실시하지 않았고, 신규채용 근로자 17명중 9명에 대한 채용전 안전교육(1시간)과 현장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2시간)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기간의 안전관리비 0,000천원(일할계산)의 정산과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설계도서에는 시험, 검사대상 공종 및 재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설계도에 시험·검사대상 공종을 명시할 때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시험 및 현장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직접시험으로 구분하고 시험실에서 시공사가 직접 실시한 품질시험이 기준이 되며 직접 시험불가 시 품질시험을 대행하는 것은 품질시험비로 인정된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제8조에 의하면 감리원은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상호간의 모순사항과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공사시행 전 적정성과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 예정가격이 20억 이상일 때에는 3천만원 이상 되는 자재는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령군(㈜㈜㈜㈜과)에서는 교통표지판 7종 401개를 직접(관급)구매하여야 함에도 사급자재로 계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현장 내 정밀한 주요구조물이 없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납품된 설계도면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시공상세도 작성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현장에서 시공사 직접시험이 가능한 39개 시험 종목에 대하여 품질시험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그 결과 고령군(㈜㈜㈜㈜과)에서는 위 공사을 추진하면서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현장 안전·품질관리가 미흡하고 공사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동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① 부당하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ÅÅ～¢¢도로 확포장공사 기성검사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고령군 ※※※※과

내 용

고령군(※※※※과)에서는 ÅÅ～¢¢도로도로 확포장공사를 ☆☆☆☆☆☆(주) 대표 ▽▽▽과 도급액 00,000,000천원에 2012.01.27. 계약 체결하여 2012.02.03. 착수하여 2016.05.0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고,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 외 0개사와 도급액 0,000,000천원에 2012.04.04. 계약 체결하고 2012.04.09. 착수하여 2016.05.31.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와 시공 시에는 해당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서 제44조에는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재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서 제6조에 따라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은 기성검사 입회,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군(※※※※과)에서는 위 공사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교 교량상판 지지를 위하여 목재동바리를 설계에 반영하고도 시공사에서 강재동바리로 시공하였는데도 책임·기술지원감리원들은 목재동바리로 시공한 것으로 기성검사(2014.12.26) 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2014.12. 29)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우우우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고령군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2015. 3. 27. ※※※※※※(주) ‼‼‼와 공사계약(0,000,000천원)을 맺고, 2015. 3. 31. 착공하여 2017.03.19. 준공 예정으로 우우우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교량 아스팔트 방수 등 계상 부적정

그런데도 고령군 ◁◁◁◁과에서는 우우우우교(L=32.0m, B=7.5m) 및 우우우우교(L=25.0m, B=7.5m)의 교대 2개소 배면 205㎡에 아스팔트 방수 공법을 솔칠2회(00,000원/㎡)

로 반영하는 것이 경제적임에도 아스팔트 바름(00,000원/㎡)품을 적용하여 0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으며, 교량 표층 포장 자재 95톤을 일반 아스콘(00,000원/㎡)을 적용하여도 무방함에도 고가인 저소음 아스콘(000,000원/㎡)을 사급자재로 적용하므로써 00,000천원을 과다계상 되게 하였다.

2. 제방도로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 등

갈수기 수위 저하로 제방도로 동상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구간에 동상방지층 453㎥를 반영하여 0,00천원 정도를 과다 계상하였고, 홍수벽 472㎥ 레미콘 타설시 붐타설(00,000원/㎥) 적용하면 보다 경제적인데도 인력타설(00,000원/㎥)품을 적용하여 10,196천원 정도를 과다계상 하였으며, 세륜세차시설(0,000원/hr) 가동시간을 2,880시간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세륜세차시설 연 평균 가동시간 600시간(표준품셈 발췌)을 감안하면 4년 10개월간의 사용료로 총 공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00,000천원(세륜세차시설 가동시간 900시간 가정시) 정도를 과다 계상되게 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계상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① 부당하게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과 ◒◒◒◒◒◒◒ 추진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고령군 ◢◢◢◢◢◢◢◢◢

내 용

1. 사업목적 외 예산사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군 우우우우과에서는 ※※※읍 ‼‼리 000번지 일원에 ◁◁◁◁◁◁◁ □□과 ◒◒◒◒◒◒◒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부지 인근에 별개로 √√√√√√√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계획한 사업비의 축소 등으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 □□과 ◒◒◒◒◒◒◒ 사업비 000,000천원을 전용하여,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령군 ◢◢◢◢◢◢◢◢◢에서는 ◁◁◁◁◁◁◁ □□과 ◒◒◒◒◒◒◒◒을 2014.09.02. (주)∞∞∞∞∞∞과 도급액 0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2014.09.22.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부지에 대한 성토 153,878㎥에 필요한 운반비 0,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본 사업장 인근에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 ∨∨사업 현장 등 5개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2014.02월부터 성토 및 운반까지 무상으로 하게 됨으로서 당초 계상된 운반비 0,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식 자동 세륜세차시설에 유지관리 인건비가 불필요 함에도 계상되어 있어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공사의 전시공사에서의 별도 마감공사로 바닥미장이 불필요한 부분에도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는 등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있는 등 총 0,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감액요인에 대하여 2015.06.12.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고령군 ◢◢◢◢◢◢◢◢◢에서는 ◁◁◁◁◁◁◁ □□□ ◒◒◒◒◒◒◒◒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감액요인에 대한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소홀 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0천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공사 설계변경 소홀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고령군 ◢◢◢◢◢◢◢◢◢

내 용

고령군청 ◢◢◢◢◢◢◢◢◢에서는 2014. 8. 28. 우우우우우(주) ≡≡≡과 공사계약(0,000,000천원)을 맺고, 2014. 9. 3. 착공하여 2016. 8. 22. 준공 예정으로 √√ √√√√√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따르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만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계약단가는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고령군 ◢◢◢◢◢◢◢◢◢에서는 연약지반처리 배수재인 모래매트를 쇄석매트(00,000㎥)로 설계변경(2015.01.07.계약)하면서 기존쇄석(40mm이하)단가를 계약단가인 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규단가인 00,000원/㎥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총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설계 변경 증액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① 설계변경 증액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